

서울교육대학교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협약기관” 이라한다)은 미래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 체제를 마련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2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강동송파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제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및 성과 확산에 협력한다.
2.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인적·물적 자원 제공(인력, 시설, 교육콘텐츠 등)에 협력한다.
3. 협약기관은 공동참여, 교육, 자문 등의 방법으로 교류·협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약기관은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의 온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 창출에 협력한다.
5. 기타 상호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제4조(세부사항) 제3조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조정) 본 협약의 내용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업무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 간의 사업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협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같다.

제7조(효력 및 보관)

1.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한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문서에 의한 협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협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날인하여 협약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22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총장 임채성

임채성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Seoul Gangdong Songpa District Office of Educational Support

교육장 박은경

박은경